

GANGJIN 

# *Web Contents*



# 목차

목차	2
자료실	3
주민감사 청구 안내	3

업무소개	공지사항	자료실	적극행정 면책상담
감사결과	공직윤리제도		

## 주민감사 청구 안내

작성일 2012.12.07 17:49      등록자 기획홍보실      조회수 1160

근거: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200명)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목록

GANGJIN

***Web Contents***

